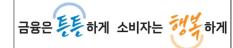


보도자료



보도	2024.10.18.(금) 조간	배포	2024.10.17.(목)		
담당부서	회계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감사제도운영팀	담당자	팀 장	손기숙	(02-3145-7977)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주요 내용

- ◈ 금감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
- √ 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 대비 **27사**(2.1%) **감소**하였습니다.
 -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8사**와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38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 **관리종목 14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 지정회사의 편의제고를 위해 회사가 직접 지정내용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조회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 √ 금번 사전통지부터, 회사가 직접 지정내용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기적 지정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
 -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한 조회방법은 (붙임3) 참고
 - ◈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24.11.12일 본통지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I 개 요

-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 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 (주기적지정)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 (직권지정)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Ⅱ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 (1,234사)

-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4사(상장 909사*, 비상장 325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 [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 대비 27사 감소
 - * 유가증권시장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
 - 이중 540사는 '24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24.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78	상장 (a)		비상장 (b)			합계 (a+b)			
구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지정(①)	178	299	477	6	23	29	184	322	506
직권지정(②)	103	329	432	253	43	296	356	372	728
합 계(①+②)	281	628	909	259	66	325	540	694	1,234

2 주기적 지정 현황 (506사)

- □ (신규 지정: 184사)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 등 184사**가 신규 지정
 -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2사
 - ** 주기적 지정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1.0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2조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7사, 5천억~2조원: 39사 등
- □ (연속 지정: 322사) '22~'23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

3 직권 지정 현황 (728사)

- □ (신규 지정: 356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6사, 코스닥 63사, 코넥스 24사) 103사,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
 -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의 順
- □ (연속 지정: 372사) 既 지정대상인 총 372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

신규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단위: 사, %)

신규 지정사유 [*]		회사 수			
		′24.10차	′23.10차	증감(증감율)	
	주기적지정	184	183	1 (0.6)	
	상장예정	238	202	36 (17.8)	
직권 지정	재무기준 (3년 연속영업손실 등)	53	74	△21 (△28.4)	
	관리종목	14	16	△2 (△12.5)	
	최대주주 (3년간 2회) /대표이사 (3회) 변경	19	15	4 (26.7)	
	감리조치	22	20	2 (10.0)	
	기타	10	25	△15 (△60.0)	
	소 계	356	352	4 (1.1)	
합 계		540	535	5 (0.9)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표기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Ш

-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① (의견제출)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
 -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 ② (제출방법)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 ③ (계약체결)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5년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24.11.12<u>.</u> ^{24.10.15}. **'24.10.29.** ^{24.11.19}.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사전통지대상 사전통지 본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1주내) 재지정 요청 (2주내) (2주) 선정 및 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금감원→회사) (회사→금감원) (금감원→회사)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2 외부감사인

-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 또한, 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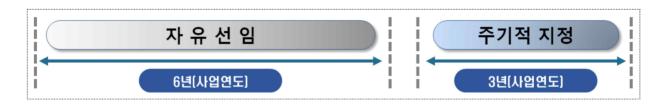
- ◈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Ⅳ 향후 계획

-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만,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 참고로,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 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추가하였음
 - *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 ①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 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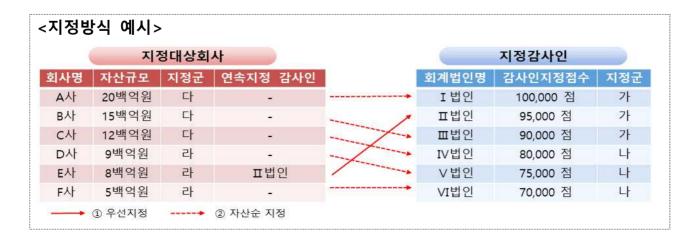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배임 발생 등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등

*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 2 지정시기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주기적 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 법인은 '24.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 익월(12월 법인은 10월) 중순경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직권 지정) 원칙적으로 주기적 지정과 동일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감사인 지정 요청일 등 지정대상 선정일의 익월 중순에 해당 사업
 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
 - *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

③ 감사인 지정방법 (외감규정 별표 4)

-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자산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하고, 그 외에는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 지정
 - * 주기적 지정의 2, 3년차 연속지정 등
 - -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2조원 이상인 경우 3배, 5천억원~2조원 2배



불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①, ②, 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회사가	기지정한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속한 군(群)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니正	다군	가군	가~나군	-		
	나군	가군	-	-		
라군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회사가	기지정한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최시기 속한 군(群)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나군	-	-		
rl 7	가군	나군	나~다군	1		
다군	나군	-	다군	-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 다만,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요청가능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히사가	기지정한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을 재지정요청	라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가군	-	-	-		
니正	나군	-	나군	-	-		
	가군	가군	_	_	-		
다군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_	-		
	간	-	_	다군	-		
	라군	-	_	_	라군		

-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 ⑤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7 외국인투자자 출자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① <u>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u>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u>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u>
- ② 화면 상단의 '접수현황'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정현황조회'를 클릭

